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및 감사 사례집
2015

목 차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사례】

제1장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개관	3
제2장 행동강령 위반사례	5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5
사례1 하자품 합격 처리 부당지시	6
사례2 특정업체 물품 구매 지시	6
[2] 허위보고 금지	7
사례3 승진심사 회의록에 허위사실 기재	7
사례4 입찰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허위 보고	8
사례5 공정률을 부풀려 상사에게 허위 보고	8
[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9
사례6 채용 관련 이해관계직무임에도 회피 논의 없이 처리	10
사례7 파견공무원의 자신의 배우자 특혜 채용	11
사례8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인사안을 직접 작성	11
사례9 배우자의 회사에 최고점 부여 후 공사업체 선정	12
[4] 업체 임직원 등 면담	12
사례10 외부 장소에서 계약체결 직전 직무관련자와 비공개 면담	13
[5] 특혜의 배제	14
사례11 상사의 고교동창에게 수의계약 특혜 제공	14
사례12 승진대상자에 대한 시험 준비 특혜 제공	14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15
사례13 기상장비 부품교체 사업 부당 추진	15
사례14 출장일수 과다 산정 및 여비 부당 수령	15
사례15 시설비 확보 없이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사용	16
사례16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16
사례17 법인카드 사적 사용	16
[7]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7
사례18 시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17
[8]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8
사례19 정치인에게 승진 청탁	18
사례20 승진심사위원회 허위 보고 등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18
[9] 산하기관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참여 금지	19
사례21 산하기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특혜채용 빌미 제공	19
사례22 산하기관에 소속기관장의 자녀 및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19
[10] 이권 개입 등의 금지	20
사례23 직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원 가입 강요	20
사례24 특정업체 소개를 통한 계약 강제	20
[11]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21
사례25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가 적힌 결혼식 화환	21
사례26 소속기관 명칭 사적 사용	21
[12] 알선·청탁 등의 금지	22
사례27 단체복 구매 관련 업체 선정 개입	22
사례28 부당한 인쇄물 수주 청탁	23
사례29 원도급자에게 하청업체 소개	23
사례30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	23

[13]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24
사례31 직무수행 중 취득한 입찰정보 부당 제공	24
사례32 친척에게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조력	24
[14]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25
사례33 용도 폐기된 관사의 임대 활용으로 월임대료 부당 수익	25
사례34 업무와 관련 없는 핸드폰 사적 사용·수익	25
[15]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26
사례35 임차 선박 선주에게 뇌물 수수	27
사례36 기상장비 유지보수 업체에게 뇌물 수수	28
사례37 공무원에 대한 향응 접대	28
사례38 행사와 관련없는 사적 비용을 산하기관에 전가	28
사례39 2만원 가량의 지속적인 식사 대접	29
사례40 기관체육대회 행사에서 입점업체로부터 물품을 무상 수령	29
사례41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선물 수령	29
[16]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30
사례42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 직원에게 선물 제공	30
[17] 외부강의 미신고 및 강의료 과다 수령 금지	31
사례43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 실시	32
사례44 외부강의에 대하여 사전 신고 없이 집계표만 작성·관리	32
[18] 금전의 차용금지	33
사례45 직무관련자의 건물에 임차	33
사례46 직무관련자로부터 수회 금전차용	34
[19]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34
사례47 홈페이지를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35
사례48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및 5만원 이상 축의금 수령	35
사례49 상급자의 모친상을 직무관련단체 등에 팩스 통지	36

[20] 품위유지	36
사례50 근무시간에 음주 후사무실에 난입하여 직원 폭언 및 협박	36
[21] 비밀엄수	37
사례51 인터넷망을 연결하여 비밀자료 무단 유출	37
[22]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38
[23] 기상청의 행동강령책임관	38

【감사원 · 자체감사 처분사례】

제1장 관측 분야 41

[1-1]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부적정(통보)	43
[1-2] 기상관측시설 중복 운영 및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기상관측장비 운영(통보)	44
[1-3] 유에스엔 기반 기상관측시설 운용 부적정(통보·주의)	45
[1-4] 제안서 평가에 의한 기상장비 구매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46
[1-5] 기상·강우레이더 통합운영 방안 미마련(통보)	47
[1-6]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48
[1-7] 자동기상관측장비 강수유무센서 관리 부적정(시정)	49
[1-8] 자동기상관측장비 첨단화사업 무게식 강수량계 하자조치 부적정(시정·주의)	50
[1-9] 자동기상관측장비 첨단화 교체장비 하자처리 부적정(시정)	51

제2장 민원 분야 53

[2-1] Open API 기반 기상지수의 민간 개방 부적정(주의)	55
[2-2] 전산처리자료 처리 기상자료제공 민원수수료 부과 부적정(주의)	56
[2-3]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통보·주의)	57

제3장 예산·회계 분야 59

[3-1] 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 계약 등 부적정(시정)	61
[3-2] 기상관측장비 리스료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주의)	62
[3-3] 기상기술개발사업 등 출연금 집행 부적정(주의)	63
[3-4]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연구개발비 정산 등 집행 관리 부적정(시정)	64
[3-5] 연구·실험실 보수공사 예산집행 부적정(주의)	65
[3-6] 연구용역 사업비 선금지급 정산 부적정(주의)	66
[3-7] 유류구입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67
[3-8] 기간제근로자 급여지급 등 회계처리 미흡(시정)	68
[3-9]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주의)	69
[3-10] 퇴직연금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70
[3-11]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사업」시설비 집행 부적정(주의)	71
[3-12]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 운용·관리 부적정(시정)	72
[3-13] 위탁연구개발과제 계약·관리 부적정(주의)	73
[3-14] 설계도 등에 의해 확정된 단일공사 추진 부적정(주의)	74
[3-15] 슈퍼컴퓨터운영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운용 부적정(주의)	75

[3-16] 관서운영경비중 재료비(210-11) 집행 부적정(주의)	76
[3-17] 시설비(420-03) 집행업무 부적정(주의)	77
[3-18] 청사(시설)관리 및 홍보용역비 집행업무 부적정(주의)	78
[3-19]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연구개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79
[3-20] 기간제근로자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예산운용 부적정(통보)	80

제4장 물품 · 재산관리 분야 81

[4-1] 국유재산 관리 및 계약 업무 부적정(시정)	83
[4-2] 유휴 행정재산 관리 부적정(시정)	84
[4-3]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사업 관리 부적정(주의)	85
[4-4]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유지보수 관리 부적정(경고)	86
[4-5] 기상위성교육 홈페이지 등 연구성과 활용 미흡(경고·통보)	87
[4-6] 낙동강 유역 자동기상관측장비 재활용 방안 부재 및 위탁 관리업무 부적정(시정·주의)	88

제5장 인사 · 복무 등 분야 89

[5-1] 승진심사위원회 허위 보고 등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징계)	91
[5-2] 성과급 지급 부적정(주의)	92
[5-3] 연구원 등 직원 채용·관리 부적정(통보)	93
[5-4] 승진업무 처리 부적정(경고)	94
[5-5] 채용 및 전직업무 부적정(경고)	95
[5-6] 인력운용 등에 관한 사항(경고)	97
[5-7]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주의)	98
[5-8] 지방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전보인사 기준 및 운영 미흡(통보)	99
[5-9]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 운영 불합리(통보)	100
[5-10]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시정·주의)	101
[5-11] 연구직 순환 보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주의·통보)	102

제6장 구매 · 용역 분야 103

[6-1] 용역계약 및 준공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05
[6-2] 하늘상태 자동관측 시스템 구매·설치 부적정(주의)	106
[6-3]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 부품교체 사업 부당추진(징계)	107
[6-4]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워크숍 등 대행용역 부적정(주의·통보)	108
[6-5]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평가관리 태만 등(징계)	109
[6-6] 국가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부적정(주의)	110
[6-7] 계약관련 서류작성 미흡(경고)	111

[6-8] 연구용 관측장비 운영·관리 부적정(시정)	112
[6-9]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급 등 부적정(시정·경고)	113
[6-10] 기후자료 보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리 부적정(시정·주의)	114
[6-11] 기상청 유·무선 통합서비스(FMC)구축사업 추진 부적정(통보·경고)	115
[6-12] 해양기상관측부이 정기점검에 대한 관리 부실(주의)	116
[6-13] 기상위성분야 교육훈련체계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17
[6-14] 위성자료 응용분야 활용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18
[6-15] 위성센터 DB·웹서비스 통합 및 지상국 스토리지 보강사업 추진 미흡(시정)	119
[6-16] 기상위성자료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DB 개선(II) 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20
[6-17]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 준공처리 및 하자보수 부적정(시정)	121
[6-18] 대국민기상 및 기후변화정책과정 교육사업 분리 추진 부적정(통보)	122
[6-19] 위탁연구 용역과제 수행 및 성과물 활용 부적정(주의)	123
[6-20] 청사 및 노장 주변 환경개선 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124
[6-21] 홈페이지 호남위험기상정보센터 구축(7차) 용역 대금지급 부적정(주의)	125
[6-22] 축전지감시시스템 원가계산 집행 부적정(경고)	126
[6-23]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I) 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127
[6-24] 연구용역과제 수행 결과 평가업무 미실시 등 과제관리 부적정(통보)	128
[6-25] 연구용역사업 계약이행 관리 및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주의)	129
[6-26] 지진관측장비 계약관리 부적정(주의·통보)	130

제7장 적극 행정 미수행 131

[7-1] 재단법인 설립·운영 부적정(통보)	133
[7-2] 공공기관 지정 대상기관 통보 미실시(주의)	134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사례

I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개관

□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기상청훈령 제786호)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에 따라 기상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의 3개 분야 21개 조항으로 구성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 한 직 무 수 행 (9개)</p>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4)
	허위보고 금지 (§4의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5)
	업체 임직원 등 면담 (§5의 2)
	특혜의 배제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7)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8)
	인사청탁 등의 금지 (§9)
	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9의 2)
<p style="text-align: center;">부 당 이 득 수 수 금 지 (7개)</p>	이권개입 등의 금지 (§10)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10의 2)
	알선·청탁 등의 금지 (§1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2)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의 금지 (§13)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4)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14의 2)
<p style="text-align: center;">건 전 한 공 직 풍 토 조 성 (5개)</p>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15)
	금전의 차용 금지 등 (§16)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17)
	품위유지 (§18)
	비밀엄수 (§19)

□ 직무관련자의 범위

-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 감사, 감독,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기상청과 계약(협약)을 체결 또는 체결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 기상청이 지도·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등
- 정책·사업 등의 결정·집행으로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등

예시

기상청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

-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의 계약상대자, 조달 입찰자
- 산하기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 기상기술개발원, APEC 기후센터, 한국형수치모델개발사업단, 기상기후아카데미 임직원

Ⅱ 행동강령 위반사례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는 **그 상급자에게 소명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처리절차 : ①부당한 지시→②소명(인적사항, 지시내용, 사유 등), 상담→
③소속기관장 보고→④소속기관장 적절한 조치

※ 소명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거나, 소명하였으나 재차 같은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경우 이행자 처벌

사례 1 **하자품 합격 처리 부당지시**

모 지방청 A과장은 OO납품업체로부터 기상장비 구입 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납품업체의 장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공무원 B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합격 처리하도록 부당지시를 하였고, 부하공무원 B는 부당지시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명하지 않고 그대로 따름.

업체로부터 납품 부탁을 받고, 하자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므로 공무원 B는 부당지시에 대하여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해야 했지만 그대로 지시에 따랐으므로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대법원에서도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복종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 636판결).

사례 2 **특정업체 물품 구매 지시**

모 중앙행정기관의 A과장은 사무실에 복사용지 등이 필요함을 알고 서무담당 B주무관을 불러 주로 공공기관에 문구류를 납품하고 있던 OO문구와 5백만원 상당의 복사용지 등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 B주무관은 내부규정을 근거로 과장의 지시에 따르기가 곤란함을 소명하였으나, 과장이 재차 같은 지시를 내리자 인사 상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마지못해 수의계약을 체결함.

특정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A과장의 지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시한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하고, 그래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나 B주무관은 소명에만 그치고 결국 부당한 지시를 따랐으므로,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2] 허위보고 금지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할 때 허위 내용을 포함 시켜서는 안됨

사례 3 승진심사 회의록에 허위사실 기재

모 중앙행정기관 인사팀 소속 공무원 A는 직원 승진임용 업무 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심사 위원들에게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에 있는 공무원 B를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공무원 B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함. 공무원 A와 친분이 있었던 공무원 C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공무원 A의 발언을 다른 승진심사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무원 A는 아무런 조치 없이 회의록에 서명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회의록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이므로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공무원 C는 공무원 A의 발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록하였고, 공무원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과하고 서명하였으므로 모두 행동강령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위반임.

사례 4 입찰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허위 보고

모 공직유관단체 계약체결담당 공무원 A는 조달계약을 의뢰한 공용물 구매 사업의 입찰업체인 B가 허위 카탈로그를 제출하자, 이를 알면서도 사업부에 카탈로그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하여, B가 규격적격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게 함.

A는 계약체결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B 업체가 제출한 카탈로그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와 다르게 허위로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위반임.

사례 5 공정률을 부풀려 상사에게 허위 보고

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은 B업체가 제작한 물품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계획과 달리 B업체의 전체 공정이 지연되어 당초 납품기한에 납품을 받지 못하게 됨. 하지만 A공무원은 공정률을 부풀려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사에게 공사 진행 보고를 함.

공정률을 부풀림으로써 마치 물품을 제때 납품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상사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므로 A공무원의 행위는 행동강령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위반임.

[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2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
6. 기상청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예

-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인 경우
- 2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처리절차 : ①상담→②판단 및 소속기관장 보고(상급자 또는 책임관)→
③인력·직무재배정

※ 기관장(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기록관리) 후 스스로 적절한 조치

사례 6 채용 관련 이해관계직무임에도 회피 논의 없이 처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본부장은 2011년 1월 대학동창 B를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직 팀장으로 채용하고 근거도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팀장으로 전환해 주는 특혜를 부여하였고, 2012년 3월 경력직 채용시험에 면접위원장으로 참여하여 고교동창인 C를 1차 면접에서 불합격되었음에도 다시 면접 기회를 부여하여 합격하도록 특혜를 줌.

대학, 고교동창은 학연이라는 친분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채용 관련 업무에서의 회피 여부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직무를 행함으로써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위반함.

사례 7 파견공무원의 자신의 배우자 특혜 채용

모 기초자치단체 A공무원은 산하 공단에 파견되어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후, 별도의 공고 없이 1인 면접을 통해 배우자를 정규 지원으로 특별 채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음.

A공무원이 채용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하고, 별도의 공고도 없이 1인면접으로 채용하는 것은 배우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이해관계 직무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8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인사안을 직접 작성

모 공직유관단체 인사담당자 공무원 A는 자신의 인사안을 직접 작성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무평정을 하고 승진대상자 순위명단에도 선순위로 등재되도록 함.

공무원 A는 인사담당자이므로 자신의 인사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임.

사례 9 배우자의 회사에 최고점 부여 후 공사업체 선정

모 지방청 A과장은 공공물 시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9개 업체가 응찰, 그 중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B업체도 포함되었음. 이를 인지하면서도 A과장은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업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여 배우자의 회사에 최고점을 부여하였고, 결국 B업체가 선정됨.

업체 선정 공고에 응찰한 A과장 배우자의 회사 B업체는 A과장의 평가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로서 A과장에게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임.

[4] 업체 임직원 등 면담

제5조의2(업체 임직원 등 면담)

- ① 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 외부인(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이거나 체결한 개인 또는 업체직원)과 면담 시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민원실)에서 공개된 만남을 가져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청사 안내 직원 등은 직무관련 담당공무원과 통화 확인 후 직무관련 외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 및 방문증을 교부하고 지정된 장소(민원실)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 외의 단순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담당직원 입회하에 사무실 출입 가능)
-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 또는 업체직원이 사무실출입 및 면담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 직무관련 외부인과 민원실(본청의 경우)에서 공개 면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 및 면담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구두 보고
 - 처리절차 : ①상급자에게 사전 보고→②면담→③사후 보고(면담자, 내용 등)
- ※ 주요사업 등 문제예상 사업의 경우 동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유지하여 파일 등에 편철(향후 자기방어에 유리)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련자 등의 외부 면담이 필요한 경우, 2인 이상 동행 면담
- ※ 업무 협의 및 지시를 위한 전화 통화 시에는 책임이 명확한 정당한 관련자에게만 통화하고 정당한 관련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통화 지양(직권남용 등 소지)

사례 10 외부 장소에서 계약체결 직전 직무관련자와 비공개 면담

모 중앙행정기관 계약담당 공무원 A는 소속기관 행사와 관련하여 기념품을 납품하기로 한 B업체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면담을 함.

공무원은 물품 구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직무관련 외부인과 면담시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민원인)에서 공개된 만남을 가져야 하므로, 외부 커피숍에서 직무관련자를 만나 면담을 한 공무원 A의 행위는 행동강령 제5조의2(업체 임직원 등 면담) 위반임.

[5]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됨

사례 11 상사의 고교동창에게 수의계약 특혜 제공

모 공직유관단체 A과장은 외부전문가로 초청되어 직원교육시간에 특강을 할 예정인 B교수가 소속기관장 C의 고교 동창임을 알게 되자, 그해 교육훈련장비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B로 특정하여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함.

공무원 A과장은 교육훈련장비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에 있어 학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를 위반함.

사례 12 승진대상자에 대한 시험 준비 특혜 제공

모 지방자치단체 A국장은 자신의 대학 후배인 부하직원 B주무관이 승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가 미진함을 알게 되자 충분히 승진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개월간 B주무관이 자신의 업무를 보지 않고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배려해 줌.

A국장이 자신의 대학후배인 B후배에게 학연을 이유로 담당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승진시험에만 준비할 수 있게 배려한 행위는 특혜로서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

사례 13 기상장비 부품교체 사업 부당 추진

2012년 기상장비 부품교체 사업 담당과장인 A는 타 사업이 추진 지연으로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부품교체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의 목적 외로 부품교체 사업을 추진한 결과 14억원의 예산을 낭비함.

필요성 없는 부품교체 사업을 예산의 목적 외로 추진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14 출장일수 과다 산정 및 여비 부당 수령

기상청 직원 A는 2012~2013년 기간 중 총 4차례에 걸쳐 여행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출장을 갔고, 출장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용무를 보았으며, 여행일수 과다 산정 기간에 대한 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수령함.

출장목적이 달성된 이후 사적인 용무를 보며 출장비를 지급받고, 여행여비를 과다 수령하는 것은 공무활동을 위한 출장비와 여행여비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15 시설비 확보 없이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사용

A연구소는 연구 및 실험을 위한 연구실 확보를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의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설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비 낙찰차액을 사용함.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A연구소는 시설비를 연구개발비 낙찰 차액에서 사용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함.

사례 16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연구소 연구원 A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해 놓고 가사일 등 개인용무를 본 후 사무실로 복귀,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하고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용무를 보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는 공무활동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허위 등록하여 수령하고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 17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모 공직유관단체 A단장은 간부들과의 단합을 위한 워크숍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뒤 골프장 사용대금 1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워크숍 후 자정 무렵 고급 유흥주점에서 간부들과 유흥비로 5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근무 외 시간인 심야 시간에 유흥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7]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사례 18 시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모 시청 A인사과장은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사촌을 정규직에 채용해 줄 것을 부탁받았고, A인사과장은 시의원의 청탁대로 해 주면 예산 심의시 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하여 이를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원의 사촌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함.

A인사과장이 시의원으로부터 친인척 채용을 부탁받은 것은 부당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위반임.

[8]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을 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 금지
-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 금지

사례 19 정치인에게 승진 청탁

6급 공무원 A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자신의 승진 순위가 낮은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A공무원 소속기관의 장과 친분이 있던 정치인에게 자신의 승진 임용을 부탁하였고, 정치인은 소속기관장에게 A공무원의 5급 승진을 청탁하여 승진하게 됨.

A 공무원은 자신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치인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이 금지) 제1항 위반임.

사례 20 승진심사위원회 허위 보고 등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2013년 인사담당계장 A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 1순위자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여 탈락시키고 12순위자를 승진대상자로 선정함.

인사담당 공무원이 승진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는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2항 위반임.

[9] 산하기관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참여 금지

제9조의2(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 ① 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직무관련 여하에 상관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시 자신의 이해관계자(친인척 등)가 지원하는 경우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참여 금지
- 산하기관 채용시험에 이해관계자가 지원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사례 21 산하기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특혜채용 빌미 제공

기상청 직원 A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개인사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개인별 점수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공란의 채점표에 서명 날인하였고, 이 후 다른 진흥원 직원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특혜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청 산하기관이므로 기상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여하에 상관없이 진흥원의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9조의2(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위반임.

사례 22 산하기관에 소속기관장의 자녀 및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상청 모 지방청장 A의 자녀 및 조카의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면접 채점표에 면접 점수가 임의 기재되는 방식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소속기관장 A의 자녀와 조카가 특혜채용 된 의혹을 국무조정실에서 지적받음

기상청 모 지방청장 A는 이해관계자인 자신의 자녀와 조카가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채용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A는 신고를 생략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9조의2(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제2항 위반임.

[10]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

사례 23 직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원 가입 강요

모 중앙행정기관 A과장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처가 기관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기관의 각 팀에 가입신청서를 주면서 일정 수 이상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함.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자신의 처가 근무하는 신용카드사의 회원에 등록하도록 강요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24 특정업체 소개를 통한 계약 강제

모 기초자치단체 사업부서 A과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녹지조성공사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알게 되자, 부하 직원 B를 청사 부근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녹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 지시함.

공무원이 특정업체에 이익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11]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행위 금지

사례 25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가 적힌 결혼식 화환

모 중앙행정기관 A국장은 자신의 친구 결혼식에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가 적힌 화환을 선물하여 결혼식장 입구에 배치함.

결혼식 화환에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적고 이를 선물하여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하는 것으로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임.

사례 26 소속기관 명칭 사적 사용

모 공직유관단체 A과장은 자신의 동생이 소속된 문예협회에서 백일장을 개최하자, 마치 자신의 소속기관에서 백일장을 협찬하는 것처럼 현수막 등 광고물에 기관명을 사용토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 대회에 공신력을 믿고 참가하도록 유도함.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A과장이 자신의 소속기관의 명칭을 백일장 현수막에 게시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임.

[12]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 금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사례 27 단체복 구매 관련 업체 선정 개입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본부장은 단체활동복 140벌을 구매하면서 구매 담당자에게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구매업체를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

진흥원 A본부장은 단체복 구입을 담당하는 구매담당자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구매업체를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 구매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28 부당한 인쇄물 수주 청탁

모 준정부기관 감사팀장 A는 같은 고향출신으로 잘 알고 지내던 출판업자 B가 인쇄물 용역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계약담당공무원 C에게 금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B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청탁을 함.

감사팀장 A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출판업자 B가 인쇄물 용역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기관 담당공무원 C에게 B를 소개하여 B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29 원도급자에게 하청업체 소개

모 공직유관단체 계약담당공무원 A는 청사 이전을 위해 B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B건설업체가 일부 사업을 하청할 것을 알게 되자 B건설업체에게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하청업체로 소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B건설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직무관련자이므로, A공무원이 직무관련자 B건설업체에게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하청업체로 소개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사례 30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

모 중앙행정기관 계약담당부서 A공무원은 관내 도서관 전산업무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대학동창이 운영하는 특정업체가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되도록 다른 위원들에게 청탁함.

A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위원들에게 소개하고, 계약업체로 선정되도록 청탁을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13]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 금지
-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사례 31 직무수행 중 취득한 입찰정보 부당 제공

기상청 A공무원은 기상장비 구매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상청에 특정 장비에 대한 구매 수요가 있게 되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장비업체에 미리 입찰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낙찰에 성공하게 도와 줌

A공무원은 기상장비 구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특정업체에 제공하여 특정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유리하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임.

사례 32 친척에게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조력

모 자치단체 건축인·허가 업무담당 A공무원은 업무 처리 중 관할 구역에 상가가 약 70백만원 상당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가까운 친척 B에게 매물 정보를 알려주고 출장을 나와 B에게 매물을 직접 안내하고 소개함.

A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매물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재산상 거래를 돕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함.

[14]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기상관측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하는 행위 금지

사례 33 용도 폐기된 관사의 임대 활용으로 월임대료 부담 수익

모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관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은 관리 하던 관사 일부가 건물 노후를 이유로 용도 폐기되어 관사에 거주하던 지방 공무원들이 퇴거하자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월임대료를 받고 운용함.

공용물인 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 · 수익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위반임.

사례 34 업무와 관련 없는 핸드폰 사적 사용·수익

모 기초자치단체 A국장은 국장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통화 및 동영상 시청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고 통화료 및 데이터이용료는 기초자치단체 회계에서 집행함.

업무용 스마트폰은 공용물이고,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는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 · 수익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위반임.

[15]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예보사업의 지도·검사, 기상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의 수수행위 금지

○ 예외 인정

-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 범위(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
-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또는 주는 행위 금지

- 3만원 이하의 선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전가하는 행위금지

사례 35 임차 선박 선주에게 뇌물 수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상장비 담당 공무원 A는 덕적도 부이 점검용 임차선박 선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함.

부이 점검용 임차선박 선주는 기상청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으로서 기상장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상장비 담당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6 기상장비 유지보수 업체에게 뇌물 수수

모 지방청 기상장비 유지보수 담당 A공무원은 유지보수 업체 측과 식사 후 만취상태에서 A공무원의 카드로 식사값이 계산되었고, 얼마 뒤 업체 측에서 자신들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카드값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식사값을 송금하여 A공무원은 이를 수령함.

위 업체는 기상청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단체로서 A공무원에게는 직무관련자이므로, A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7 공무원에 대한 향응 접대

모 지방청 A공무원은 기상장비 유지보수 B업체 이사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안마시술소 접대를 받음.

A공무원에게 기상장비 유지보수 B업체는 기상청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단체로서, A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38 행사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을 산하기관에 전가

모 지방청 A공무원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2시간여 동안 스키를 탔고, 사적 스키비용을 산하기관 워크숍 경비로 결재토록 함.

A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스키비용을 워크숍 경비로 결재하도록 한 것은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 또는 전가하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5항 위반임.

사례 39 2만원 가량의 지속적인 식사 대접

모 광역자치단체 A공무원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을 담당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로부터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2만원 가량의 식사 대접을 받음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는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으나, 사업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2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는 행위는 통상적 관례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A공무원이 대접받은 식사비 수수 총액이 위반금액으로 간주되고,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는 사안임.

사례 40 기관체육대회 행사에서 입점업체로부터 물품을 무상 수령

모 중앙행정기관 A공무원은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청사 내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치약, 커피쿠폰, 손수건 등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고, 이를 체육대회 경품으로 사용함.

청사 내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A공무원이 체육대회행사를 개최하면서 입점업체로부터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 41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선물 수령

모 중앙행정기관 사업부서에 새로 부임한 A국장은 부하직원들로부터 부임을 축하하는 명목의 7~10만원 상당의 난 화분을 수수함.

부임 축하 명목의 화분이 비록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행위는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16]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금지

사례 42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 직원에게 선물 제공

모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 A원장은 연말 감사 인사를 한다며 산하기관의 감독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 B국장에게 5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택배로 전달함.

공무원이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 임원에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행위는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이고, 이를 전달받은 상급기관 임원 역시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므로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17] 외부강의 미신고 및 강의료 과다 수령 금지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전산시스템(e-사람)을 통해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기관에서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미리 전산시스템(e-사람)을 통해 신고하여야 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강의일 경우 신고 의무 없음)
-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가는 행동강령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단위 : 천원 / 1시간)

구 분	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시	200	120	100	

사례 43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 실시

모 연구소 소속 공무원 A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9차례에 걸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외부강의에 참석하면서 수요기관의 공문요청이 아닌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요청에 의하여 강의를 실시하여 대가를 받았고, 연구소장에게 외부강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에서 외부강의 등을 실시할 경우 직무관련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생략한 공무원 A의 행위는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위반임.

사례 44 외부강의에 대하여 사전 신고 없이 집계표만 작성·관리

모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A는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수행한 일부 직원 B, C, D(3인 5건)에 대해서 규정에서 정한 신고서를 받지 않고 외부강의에 대한 집계표만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음.

외부강의를 하는 공무원은 전산시스템(e-사람)을 통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B, C, D는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위반한 것이고, 행동강령책임관도 외부강의에 대하여 집계표가 아닌 신고서를 접수받고 관리하여야 함.

[18] 금전의 차용금지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금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또는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사례 45 직무관련자의 건물에 임차

모 중앙행정기관 계약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A사무관은 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B대표가 건물에 임대료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대표의 건물에 월 1백만원의 임대료를 월 500천원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B대표 건물에 거주함.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사무관은 직무관련자인 B대표로부터 부동산을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대여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위반임.

사례 46 직무관련자로부터 수회 금전차용

모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A는 소속기관의 입찰에 응한 업체 B의 입찰 제안서 평가가 한 달도 남지 않는 시점에 업체 B의 사장 C로부터 30백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1개월 이내에 변제함.

입찰에 응한 업체 B의 사장 C는 직무관련자로서 금전을 빌릴 수 없는 대상이므로, 공무원 A가 C로부터 금전 30백만원을 차용한 행위는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위반임.

[19]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 기관의 장 및 직원상조회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 금지
 - 단, 친족,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직원, 사내의 내부 통신망과 신문·방송 등 통지 가능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수수** 금지

사례 47 홈페이지를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OO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함으로써 로그인 없이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함.

기관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등재하는 것은 신문, 방송 및 내부통신망을 통한 통지 등 공직자행동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일반인에게 공개된 형태로 경조사를 알리는 것으로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임.

사례 48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및 5만원 이상 축의금 수령

모 중앙행정기관 사업부서 A공무원은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 계약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계약담당자 및 업체대표에게 청첩장을 전달하였고, 참석하지 않은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결혼식을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함. 또한 결혼식 당시 20여 개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50만원까지 총 5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음.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고지하고,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 축의금을 수수한 행위는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임.

사례 49 상급자의 모친상을 직무관련단체 등에 팩스 통지

모 위원회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은 자신의 부서 상급자인 B공무원의 모친상이 있자, 위원회가 추진하는 연구 사업에 지원했던 대학교수들에게 팩스로 모친상을 통지함.

공무원이 팩스를 통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단체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임.

[20] 품위유지

제18조(품위유지)

- 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사례 50 근무시간에 음주 후 사무실에 난입하여 직원 폭언 및 협박

모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는 오후근무 시간에 만취상태로 술병을 들고 사무실에 난입하여 폭언과 소란 행위를 하고 직원들을 협박함.

공무원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음주,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므로 공무원 A의 행위는 행동강령 제18조(품위유지) 위반임.

[21] 비밀엄수

제19조(비밀엄수)

-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기상청 정보화 업무규정」과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외부기관 제공 시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 필요

사례 51 인터넷망을 연결하여 비밀자료 무단 유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직원 A는 서울관측소의 공무원 B에게 진흥원 PC에서도 기상청 내부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회선연결을 요청하였고, B는 별다른 판단과 보고 없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여 진흥원에서도 기상청 내부망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기상청 정보통신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당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정식 지정되지 않은 진흥원은 기상청 내부망 연결이 불가하였고, 결국 B의 내부망 연결로 인해 외부업체 직원이 기상청 내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상당량의 문서를 유출해 갔음.

기상청공무원 B는 기상청 정보통신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의 내부망 연결을 시도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19조(비밀엄수) 위반임.

[22]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은 즉시 반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 직접 반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환 비용 청구 가능(증명자료 첨부)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소속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자는 제공자에게 반환
- 신고 된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인도
- 제공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하여 인도된 금품 등의 처리 방법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 처분
 - 멸실·부패·변질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 기타 절차(14일간 공고 등)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 수 있음

[23] 기상청의 행동강령책임관

- 기상청 본청 : 감사담당관
- 국립기상연구소 : 연구기획운영과장
- 지방기상청 : 기획운영팀장
-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장
-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운영과장
-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조사 처리 업무를 담당

감사원 · 자체감사 처분사례

제1장

관 측 분 야

[1-1]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부적정(통보)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측자료 수집률이 저조하여, 당초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활용시스템 주요 영역 중 관측기관의 표준화연계서버와 기상청의 공동활용시스템 사이의 기상관측자료 송·수신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유지보수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시·군·구에 구축하기로 하였던 표준수집부가 실제 구축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3,600여 개 관측장비의 관측자료가 관측기관 수집서버에 수집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관측자료의 낮은 수신율은 이후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2011년 말까지 27개 관측기관의 관측자료를 100% 수집하기로 한 당초 목표와 달리 2013년 5월에도 전체 3,825대 중 2,037대(53.3%)의 관측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상관측 및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측기관에 품질이 보증된 관측자료와 기상현상별, 업무목적별로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공동활용대상 관측자료가 제대로 수집·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1-2] 기상관측시설 중복 운영 및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기상관측장비 운영(통보)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청 관리대상 기상관측시설 3,465개 중 224개 시설에 대한 중복 설치·운영이 해소 되지 않고 있으며, 940개 장비가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채 운영 중임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에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 제3항, 제23조에 관측기관은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상청장은 시정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 계획’ 을 최초 수립한 2008년 이후 5년여가 지난 2013년 5월까지도 인근 10m 거리에 강우량계(춘천시)나 자동기상관측장비(인제군)가 중복 운영되고 있는 등 관리대상 시설 3,465개 중 224개 시설의 중복 설치·운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기상관측 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상관측장비의 검정유효기간을 점검한 결과 2013년 5월 말 기준으로 국가 기상관측장비 3,465개의 27.1%인 940개가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채 운영되고 있었는데도 해당 관측기관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기상관측시설 중복 설치·운영 해소 방안과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장비의 재검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1-3] 유에스엔 기반 기상관측시설 운용 부적정(통보·주의)

USN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하면서 관측 환경이 열악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기존 기상관측시설과 중복된 위치에 설치하여 관측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됨

「기상관측표준화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기상측기는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서,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 등이 적은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2007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주도에 총 51개소의 USN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하면서 부지확보가 쉬운 장소 위주로 설치함으로써 15개는 2.5km 이내에 설치하고, 23개는 열악한 관측환경에 설치하여 총 26개(2.5km 이내 및 열악한 환경 조건 중복 포함)를 부적정한 장소에 설치·운영함.

기상관측시설 중 관측환경기준에 미달된 곳에 설치되거나 기존 기상관측시설과 중복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서에 통보 및 주의 조치

[1-4] 제안서 평가에 의한 기상장비 구매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장비 도입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인 필수조건의 지정 기준과,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하는 사전검토서 작성 기준이 없어 기상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제안서 평가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장비의 규격(사양, 성능 등) 이외에 수행계획,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 중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85점) 이상 받을 경우에는 규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음.

장비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제안요청서에서 필수조건으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제안서 평가 등 구매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수조건을 충족시키는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전검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전검토 내용, 보고절차 등을 규정함이 필요함.

필수조건 지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격 미달의 장비가 도입되거나, 사전검토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필수 규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가 선정되는 등 기상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제안서 평가 시 필수조건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적합 및 부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평가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안서 사전검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에 의한 구매계약 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1-5] 기상·강우레이더 통합운영 방안 미마련(통보)

기상청과 국토교통부간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에 협력하고 있으나, 레이더기지 설치·운영에 관한 통합운영은 하고 있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조직·인력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기상청과 국토교통부는 2010. 6. 30. “범정부적 기상-강우레이더 공동활용협약”(이하 “공동활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각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레이더의 관측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서로 운영하고 있는 레이더의 관측성과 관측반경, 관측전략(관측고도각 등), 레이더의 위치, 각 레이더기지에서 수집한 실시간 관측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양 기관이 2010. 6. 30. 공동활용협약을 체결 할 때, 기관 간 레이더 관측자료의 공유와 활용에 대해 협약하였을 뿐, 레이더기지 설치·운영에 관한 통합운영방안은 고려하지 않음.

이에 레이더 관측망의 중복 구축, 레이더기지 유지보수 및 운영의 기관별 독자적 수행 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고, 또한 조직·인력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과 아울러, 태풍 등 재해기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합동 대응이 어려워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와 재해 대비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레이더 관측 영역이 중복된 강우레이더 구축사업과 기상레이더 교체사업을 상호 조정하는 등 기상·강우레이더를 합리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1-6]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55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일괄 교체하면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총 187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교체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결과를 가져옴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09-37호 및 제2011-18호)에 기상관측장비의 내용연수는 2012년 전에는 9년, 이후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최소한 내용연수 9년이 지난 장비만 교체하여야 하고 일부 성능 개선이나 관측 자동화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기상센서만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55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일괄 교체하면서 내용연수가 4년이나 남아 있는 5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일괄 교체하는 등 내용연수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총 187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일괄 교체하였고, 교체한 자동기상관측 장비는 124대는 불용처리하고 40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1,465백만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

기존 방식대로 2014년에도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일괄 교체할 경우 약 691백만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어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1-기] 자동기상관측장비 강수유무센서 관리 부적정(시정)

자동기상관측장비에 설치된 강수유무센서의 작동상태에 이상이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왜곡된 관측자료가 생성됨

「지상기상관측지침」 2.2.11에 따르면 강수유무센서는 설치한 목적대로 비, 눈 등 강수현상이 있을 때에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여 기록되어야 하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따르면 안개 또는 이슬에 의한 오작동 방지를 위해 강수유무센서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동기상관측장비에 설치된 강수유무센서의 작동상태를 조사한 결과 총 24대 중 9대의 경우 강수현상이 전혀 없는데도 처음부터 강수량이 0.5mm로 기록되고, 또 0.5mm가 증가하면 15분간 강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반복하여 작동되며, 실제 강수 현상이 있는데도 홈페이지 등에 강수가 없는 것으로 표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A기관에서는 B지방기상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고도 센서를 보완·교체는 하지 않은 채, 도서 지역의 관측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왜곡된 관측 자료가 생성되는 결과를 초래함.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

[1-8] 자동기상관측장비 첨단화사업 무계식 강수량계 하자 조치 부적정(시정·주의)

무계식 강수량계의 관측 성능에 오류가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고 타사 제품으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사 제품은 히터기능이 없어 동절기 강수량 관측에 차질이 우려됨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음.

A지방기상청에 설치한 무계식 강수량계의 경우 2012.12.24. 검정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에 강수현상이 없는 상황에도 0.1mm가 기록되고, 기존의 전도형 우량계와 비교 관측한 결과 0.5mm~3.0mm의 일 강수량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발견됨.

B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은 하지 아니한 채, 계약상대자에게 강수량 자료처리프로그램(강수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보완 요구 및 시험운영만을 하고, 무계식 강수량계 관측 값을 검사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현업에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전도형 우량계와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였음. 또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위 무계식 우량계와 모델이 다른 타사 제품으로 교체하여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히터기능이 없어 동절기에 저수통이 동결될 경우 강수량을 관측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 및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1-9] 자동기상관측장비 첨단화 교체장비 하자처리 부적정(시정)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2년도 지상기상관측장비 첨단화 사업으로 교체된 장비 중 10여개 장비의 ‘풍향·풍속’ 관측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자동기상관측장비 첨단화 사업 계약 조건에 따르면 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원인분석과 함께 신속하게 무상 수리 또는 하자부품을 교체하여야 하고, 장애현상은 도서지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 긴급보수를 해야 하나,

A지방기상청에서 2012. 12. ~2013. 5. 까지 총 4회에 걸쳐 장애현상에 대해 장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B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점검 및 하자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등 장애접수 및 장애조치 체계에 문제점이 있음.

또한 2012년도 지상기상관측장비 첨단화 사업으로 교체된 장비(50대)의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부산 레이더’, ‘가덕도’ 지점 외에도 10여개 지점에서 ‘풍향·풍속’에 대한 빈번한 관측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

관계 기관에 시정 요구 및 장비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제2장

민원분야

[2-1] Open API 기반 기상지수의 민간 개방 부적정(주의)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50종의 기상지수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26건의 개방 신청을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절함

50종의 기상지수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기상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간으로부터 개방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나,

2011. 10. 7.부터 2013. 2. 21. 사이에 민간에서 개방해 달라고 신청한 26종의 기상지수, 총 326건에 대하여 타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개방을 거절.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기상지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방하지 않거나 생산이 중단되고 미개발된 기상지수를 개방목록으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

[2-2] 전산처리자료 처리 기상자료제공 민원수수료 부과 부적정주의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정된 민원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 기준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기상자료제공 수수료를 과다 청구함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가 높아 수요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0.5.28 공표·시행)을 통하여 조정 하였으나,

A지방기상청 기후과 민원담당자는 2010.9.8. 민원인이 신청한 전산처리 기상자료제공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2010.5.28 개정·시행된 「민원사무세부처리지침」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아 정당한 수수료 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함.

민원인에게 수수료 환불조치 및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2-3]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통보·주의)

특정관리해역의 특보발표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특보 자동조회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민원 개선 과업을 추진하여, 기상특보 자료 전체를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각 특·정보 관서에서 관할구역의 특보자료를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예보업무규정 제31조(특보구역) 제2항에서 정한 특정관리해역의 특보발표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도 그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지특보까지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한 전자민원 개선’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면서, ‘기상특보는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국지특보까지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라는 과업사항을 명시하였음.

그 결과 ‘기후자료 대국민서비스 체계 개발(II)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특정관리해역에 대한 특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할 수 없어 기상 특보자료 전체를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상 특보철’의 기상현상증명 및 기상자료제공을 위해 각 특·정보 관서에서 관할구역의 특보자료를 수작업으로 별도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이 저하되고 있음.

특정관리해역의 특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및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제3장

예 산 · 회 계 분 야

[3-1] 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 계약 등 부적정 [시정]

민간대행사업비를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게 통신료, 장비임차료 등 경비로 사용하였고, 불용금액으로 임차료를 미리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임차료를 미리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이중으로 지급함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대행역무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민간대행사업비(320-08목)는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기상관측장비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 계약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잔여자금 및 이자발생액은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A기관은 통신료, 장비임차료 등 경비 10,000백만원과 위탁수수료 130백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의 불용 금액을 최소화한다는 사유로 잔여자금을 기상관측장비 임차료를 미리 납부하는 데 사용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리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비 795백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함.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난 민간대행사업비 편성 및 지출이 없도록 하고 대행역무사업비 집행 잔액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이중으로 지급된 사업비를 회수조치

[3-2] 기상관측장비 리스료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주의)

기상관측장비 리스료 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편성하여 타 용도로 전용하는 등 집행 업무를 편법적으로 운영함

과년도에 취득한 각종 기상관측장비 리스료를 임차료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실제 소요되는 리스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여 남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기상관측장비 리스료 예산을 실제소요액보다 많이 편성하여 배정받은 후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었거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분야에 리스료 집행 잔액을 전용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

[3-3] 기상기술개발사업 등 출연금 집행 부적정(주의)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기술개발 출연금으로 내부수요에 따른 정책용역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10건의 정책용역계약을 미리 특정한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기상기술개발사업 등 출연금(350목)을 출연하여 집행하도록 할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기본목적에 따라 기상과 지진, 기후과학 분야의 기술개발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내부 필요에 의한 정책용역 등은 연구개발비(260목)로 집행하되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에 부쳐 집행하여야 하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지진·지진해일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60백만원) 등 내부 수요에 따른 12개의 정책용역과제(계약금액 1,051백만원)를 연구개발비(260목)가 아닌 기상기술개발원에 출연한 기술개발(R&D) 출연금(350목)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음. 더욱이 이 중 선진 기상외교를 위한 국제협력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계약금액 50백만원) 등 10개의 과제는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기상기술개발원에 시달하였고, 기상기술개발원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지정된 계약상대자와 용역계약을 맺는 등 부당하게 정책용역을 수행하였음.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

[3-4]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연구개발비 정산 등 집행 관리 부적정 [시정]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기상청 직원에게 한수예의 인건비를 지급해서는 아니 되나, 해당직원의 직무대행 직책수당을 인건비 예산으로 지급하였고, 연구원 개인의 학회 입회비 및 연회비를 직접비로 부당 지급함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사업단의 차석인 책임 연구원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게 하지 않고 업무 관리 감독자이면서 국가 공무원인 직원이 직접 사업단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기상청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나 해당직원의 직무대행 직책수당을 “인건비(임원수당)” 비목의 예산으로 지급함.

또한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단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종신학회비,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위 사업의 직접비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개별 연구원의 학회 입회비 및 연회비를 “직접비-연구활동비” 에서 지급함.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시정 요구 및 개별 연구원의 학회 입회비 및 연회비로 지급된 금액 회수조치

[3-5] 연구·실험실 보수공사 예산집행 부적정(주의)

연구개발비 낙찰차액을 불용하지 않고, 집행지침에 어긋나게 성격이 전혀 다른 시설변경 공사를 위해 집행함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의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으로, 시설·장비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비용은 시설비(420-03)목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건설비(420)목의 자체전용은 “현행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연구개발비(260목)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타 사업으로의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한 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A기관에서는 연구원(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연구 공간 부족으로 연구 및 실험실을 확보하기 위해 13개 과제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197백만원 중 71백만원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일부(208㎡)에 대하여 시설 변경공사를 시행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3-6] 연구용역 사업비 선금지급 정산 부적정(주의)

사업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성대가가 완료된 총 102건 중 100건의 연구용역으로 지급된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채권확보 후 사용내역서를 통하여 계약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A기관에서는 선금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이행보증서 면제 기관을 제외한 업체에 대하여 선금급 사용각서를 징구하면서, 지급된 선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기성대가가 완료된 총 102건 중 100건의 연구용역으로 지급된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지 않고, 정산을 실시하지 않음.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3-7] 유류구입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기상1호 건조가 지연되면서 필요 없게 된 2010년 유류구입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유류를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6개월 후 이관조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류이송 비용을 발생시킴

기상1호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2011년 5월까지 선박 건조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11.5.30. 취항하여 해양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10년도에 편성된 유류 구입비 예산은 불용처리 해야 했으나,

2010년도 차량선박비 예산 항목에서 선박용 디젤유 40,000L 외 4종의 유류를 구매하여 보관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이관 조치하면서 유류 이송 비용이 추가 발생 됨.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3-8] 기간제근로자 급여지급 등 회계처리 미흡(시정)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지급방식을 국고금 거래은행 계좌 이체방식으로 개선하면서 기간제근로자 1인의 계좌번호를 착오 기재하여 1개월분의 급여가 2개월간 미 지급되었으며, 회계관계 직원이 기간제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개인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자동이체 납부일에 국민연금공단으로 송금함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초과근무수당 등을 관서운영경비에서 개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해 오다가 2011년 12월분부터 국고금 거래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의뢰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20명에 대한 2011년 12월분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국고금 거래은행으로 이체 의뢰하면서 계좌번호를 착오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의 12월분 급여가 2개월간 지급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기간제근로자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를 위하여 기관분담금을 지출 결의하고, 본인분담금을 원천징수하여 기관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기관명의 통장을 관리하던 회계관계직원이 연금보험료가 자동이체 되기 전인 2010.12.31자로 통장 잔액을 자기앞수표로 개인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자동이체 납부일인 2011.1.10 국민연금공단으로 1,565,820원을 송금하였음.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 및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

[3-9]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면서 당초 승인된 정수보다 많은 차량을 구입하여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특히 2011년에는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진도 하지 않은 채 차량 구입비로 집행함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 급 행정기관에서 차량 총 정수는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A기관은 대행역무사업 수행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0년도에 기동보수반 운영 차량 10대 구매예산 계상하고, 2011년도에도 본부 승합차 1대 및 기동보수반 운영 차량 3대 구매예산을 계상하여 기상청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득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 승인된 차량대수 10대 보다 4대가 많은 총 14대를 구매하였고, 2011년도에 승인대수 보다 2대가 많은 본부 승합차 2대 및 기동보수반 운영 차량 4대 총 6대를 구매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특히 2011년에는 대행역무사업관련 ‘장비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를 추진조차 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는데 집행함.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3-10] 퇴직연금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퇴직급여 산출시 정기적 급여와 비정기적 급여를 모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정기적 급여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정당한 퇴직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함

A기관의 퇴직급여는 직원이 퇴사 할 경우에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근속년수 1년 미만인자는 미지급),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발생된 정기적 급여(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와 비정기적 급여(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명절휴가비+기타 수당 등)를 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정기적 급여인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급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적 급여 성격인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만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후 일정률(8.3%)를 곱한 금액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실제적립액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정당한 퇴직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음.

퇴직금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기관에 시정 요구

[3-11]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사업」 시설비 집행 부적정(주의)

세출예산은 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에 집행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조정해야 하나, 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0백만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3개 시설공사 사업비로 집행함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에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전용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사업 목적과 무관한 기후변화감시 보조관측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후변화관측망 보강” 세부사업 중 시설비(420-03)로 전용절차를 걸쳐 보조관측소 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맞게 재원을 마련한 후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전용절차를 수행 하지 아니하고, A기상대(기후변화감시 기본관측소) 전산실 환경개선공사 및 오존존데 저장창고 신축공사 등 2개 사업에 39백만원, B기상대(기후변화감시 보조관측소) 자외선 관측환경 개선공사에 11백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총 50백만원을 목적 외로 집행함.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3-12]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 운용·관리 부적정(시정)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는 주기적으로 검정을 수행하여야 하나, 검정비용으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회의실 임차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검정대상 장비 총 44대 중 13대가 검정유효기간이 최대 3년 경과된 채 운용됨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는 각종 센서를 통해 기후변화감시 물질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장비로써 시간경과에 따라 물리적으로 장비의 감지특성이 변화하여 관측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장비담당자에 의한 QC만으로는 정확한 관측값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측정센서 및 고유상수 재측정 등 검정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WMO에서도 「보고서 No.143 및 No.172」 등에서 주기적 검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기후업무규정」 제14조(장비의 검정)에 장비별로 주기를 정하여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측장비 검정비용으로 편성된 ‘기후변화관측망 보강’ 사업의 최근 3년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책자인쇄 경비 등으로 6백만원을, 2012년도에는 53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회의실 임차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

또한, 관측장비에 대한 연간 검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하고 검정만료 도래시기에 따라 장비별로 수시 검정계획을 수립한 결과 사업예산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 검정대상 총 44대 중 오존분광광도계 등 13대는 검정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 경과된 채로 운용이 되고 있음.

관측장비 검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계 기관에 시정 요구

[3-13] 위탁연구개발과제 계약·관리 부적정(주의)

기상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 과제수를 3개에서 6개로 확대 하고 위탁연구개발비의 39%인 136백만원을 증액하였음. 이듬해에도 위탁연구개발 과제의 내용 변경, 비 위탁 과제로 변경, 신규 위탁과제 추가 등 협약내용과 다르게 임의 조정하였고, 4개 과제에 대해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 조치 하였으며, 2개 과제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연구목적 및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주관연구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A기관이 2011년 1월에 기상청과 체결한 협약서(연차실적계획서)에 3개 과제에 위탁연구개발비 350백만원을 집행하기로 되어있는데도, 기상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과제수를 3개에서 6개로 확대하였는가 하면, 협약체결 당시 계획된 위탁 연구개발비의 39%인 136백만원을 증액한 바 있음.

2012년도 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도 기상청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8개 과제의 위탁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7개월 후에 4개 과제는 내용 변경 및 개발비 규모를 조정하고, 3개 과제는 비 위탁 과제로 변경하면서 신규 위탁과제 2개를 추가하였으며, 1개의 과제는 수행하지도 않음. 또한 지체 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해 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4개 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이 계약기간 내 완료되지 않자 계약기간 연장 조치를 하였으며, 그중 2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지연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2.5/1000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서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

[3-14] 설계도 등에 의해 확정된 단일공사 추진 부적정(주의)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부대공사를 분리하여 준공일 이후 수의계약으로 시공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분할계약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8호) 제15조(정의) 제2호에 따르면 단일공사는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A지방기상청은 청·관사 신축과 부대공사를 단일공사로 설계하고도 울타리·조경·휴게공간 설치 등 부대공사를 본 사업에서 분리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준공일 이후 분리한 부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공함으로써 409백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집행함.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3-15] 슈퍼컴퓨터운영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운용 부적정주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국내·외 출장기간 중 출납보조공무원에게 재정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일시 양도하여, 출납보조공무원이 총 43건의 246백만원을 지급 처리함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으며,(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전자결재시 공인인증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받은 행위를 금지(전자서명법)하고 있으나,

A부서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국내·외 출장기간 중 출납보조공무원에게 재정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일시 양도하여 총 43건 246백만원을 지급처리하게 하였음.

국고금관리법 및 전자서명법을 위반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3-16] 관서운영경비중 재료비(210-11) 집행 부적정(주의)

사무용품 구입비를 일반수용비가 아닌 재료비에서 집행하였고, 전산소모품 구입 예산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재료비에 편성함

재료비는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나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에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순 사무용품 구입비(9건, 39백여만원)를 일반수용비가 아닌 재료비에서 집행하였고, 2011년에는 전산소모품 10백만원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재료비에 예산 편성 하였음.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3-17] 시설비(420-03) 집행업무 부적정(주의)

낙찰차액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이용하고, 미집행 잔액을 자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집행함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비 낙찰차액이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기상레이더센터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시설비 미집행 잔액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집행심의회와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설비를 집행하면서 레이더사이트 보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11년에는 낙찰차액 중 190백만원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12년에는 미집행 잔액 중 156백만원을 자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보수공사 용도로 총 346백만원을 충당하여 집행함.

관련부서의 주의 조치

[3-18] 청사(시설)관리 및 홍보용역비 집행업무 부적정(주의)

청사·시설관리용역 및 홍보용역비 예산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여 집행함

기상레이더센터 청사·시설관리용역 및 홍보용역은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어 관리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집행 비목은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일용임금 편성단가)를 적용하는 위탁사업비(210-15)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최근 3년간 청사·시설관리용역 및 홍보용역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여 집행함.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3-19]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연구개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편성된 시험연구비를 회의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집행함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 하면 아니 되나,

2011년도 전국기후관계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직원 60명의 여비를 사업비 (시험연구비 210-13목)를 사용하여 집행함.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3-20] 기간제근로자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예산운용 부적정 [통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시험연구비 내의 일용임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기타직보수 내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인센티브 재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미충원 및 결원으로 발생한 잔여 일용임금을 사용함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3조(보수)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하고, 봉급 및 수당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는 기타직보수(110-02목)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시험연구비(210-13목)내의 일용임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별도로 기타직보수내에 편성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미충원 및 결원으로 발생하는 일용임금을 사용하여 인센티브와 성과급으로 지급함.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의 보수는 기타직보수(110-02목)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인센티브 및 성과급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제4장

물품 · 재산관리 분야

[4-1] 국유재산 관리 및 계약 업무 부적정(시정)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도 없이 A기관의 사무실과 원장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위탁 및 대행이 불가능한 A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용역 건에 대해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또한 A기관이 위탁사업비를 타 목적으로 임의 이용하였다 반납한 사실을 인지 하고도 제재하지 않음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청이 국유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상청은 사용허가도 없이 별도의 사무공간을 A기관에게 사무실과 원장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와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용역을 수의계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견적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상청은 위탁 및 대행이 불가능한 A기관과 ‘2010년 수치예보 전문기상 인력 양성사업’ (계약금액 400백만원)을 수의계약 하였고, 용역 5건(계약금액 합계 216백만원)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하였으며, A기관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위탁사업비 75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23일 내지 70일 동안 사용한 다음 반납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함.

A기관에게 변상금 징수 조치 및 관련자 5명에게 주의 조치

[4-2] 유휴 행정재산 관리 부적정(시정)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 기획재정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활용계획도 없는 행정재산을 14년간 보유하고 있었음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이하 “유휴 행정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을 완료한 1998. 12. 15. 이후 14년여가 지난 2012. 3. 16. 현재까지도 위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없이 보유하고 있음.

해당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시정 요구

[4-3]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사업 관리 부적정(주의)

건축물 신축과 함께 장비 구입을 추진하면서 장비 도입시기를 건축물 완공 이후로 맞추지 아니하고 완공 이전에 도입하여 타 기관에 임시 설치하게 되었고, 건축물 완공 후 이전 설치함에 따라 불필요한 이전 비용이 발생함

건축물 신축과 함께 장비 구입을 추진할 때에는 장비 이전·설치비 등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가 설치되는 관서의 건축물 완공시기에 맞추어 장비가 도입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나,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비구매비(자산취득비)를 A기관이 완공되기 이전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A기관에 바로 설치하지 못하고, 3개 타 기관에 분산·설치하였음.

그 결과 A기관 완공 후 다른 곳에 설치된 장비를 다시 이전하는 등 추가 비용(74백만원)이 발생하게 되어 같은 금액만큼 예산 낭비를 초래함.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

[4-4]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유지보수 관리 부적정(경고)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조치 허용시간내 조치한 비율이 73.2%에 불과하고, 18.1%는 장애조치 기록 조차 없으며, 예비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예비품 구매 및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상관측망 설치·운영 지침」 1.2. (점검·보수 및 장애조치)에 따르면 내륙에 위치한 경우 24시간 이내, 도서 및 특정지점은 선박출항시각 또는 현장접근이 가능한 시각 부터 24시간 이내에 장애조치를 완료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예비품 및 소모품을 구매할 때에는 장비의 불용 및 교체 계획, 전년 도 고장발생에 따른 예비품 사용내역 관리를 통해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정량을 구매해야 하며,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출급내역서를 작성하여 활용부서에 출급 하고 물품관리대장을 운용하여 물품이력을 관리해야 하나,

A기관이 2011년도 자동기상관측장비 544대에 대한 장애조치 현황을 보면 장애건수 총 1,306건 중 24시간 이내 조치한 건수가 956건(73.2%)에 불과하고, 114건(8.7%)은 24시간이 지난 후 복구되었으며, 236건(18.1%)은 장애조치를 한 기록조차 없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배터리 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도 즉시 보강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방재기상업무기간인 2011. 7.11 부터 같은 해 8.22 까지 42일간 관측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

그리고 2011년 12월 이전에 구매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용 5,275개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았음. 그 결과 2011년 12월에 사업비 180백만원으로 17종 344개의 소모품 및 예비품을 구매하였는데 2012년 5월 현재 5%에 해당하는 17개만이 소요되어 327개가 남아있는데도 2012년 예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예산 488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소모품 및 예비품 구매가 적정 소요량을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

[4-5] 기상위성교육 홈페이지 등 연구성과 활용 미흡(경고·통보)

기상위성 사이버교육 홈페이지가 당초 계획과 달리 대국민용이 아닌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천리안 위성 맞춤형 영상정보는 당초 목적인 케이블 방송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서비스하고 있음

대국민 대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상위성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개시 전에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2013년도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지원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에 웹 취약성 검토를 요청하여 점검을 받은 후에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보완 후 외부 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하나,

2013.11.14.에 웹 취약성 검토를 정보통신기술과로 요청하고,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사항을 같은 해 12.4.에 회신했는데도 2014.4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완사항을 개선하지 않았음. 그 결과 당초 목적대로 대국민 기상위성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를 서비스 하지 못하고, 인트라넷을 통하여 내부직원만 활용이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한 교육콘텐츠 14건에 대한 조회 수도 37회로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임.

또한 케이블 방송 및 인터넷 매체에 다양한 고해상도 위성영상 콘텐츠를 서비스 한다는 목적으로 대내외 환경 조사 없이 '천리안 위성 맞춤형 영상정보 생산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 위 사업이 2011.12.22.에 완료되었는데도 수요자를 위한 제공방법 및 제공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당초 목적대로 케이블 방송 및 인터넷 매체에는 서비스를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서비스 하고 있음.

대국민 기상위성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를 서비스의 향후 활용방안과 천리안 위성 맞춤형 영상정보의 활용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4-6] 낙동강 유역 자동기상관측장비 재활용 방안 부재 및 위탁 관리업무 부적정(시정·주의)

자동기상관측장비 10조를 철거 하면서, 해당 장비의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내용연수가 4년~8년이나 남은 기상관측장비 10조를 기상청 본청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또한 관측장비 위탁관리를 하며 월간 처리 실적부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된 8명에게 위탁 관리 승낙서 등 관련 증빙자료도 징구하지 않음

「물품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09-37호 및 제2011-18호)에 따르면 기상관측장비의 내용연수는 2012년 전에는 9년, 이후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강정고령보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기상관측장비 10조를 철거 하면서, 해당 장비의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내용연수가 4년~8년이나 남아 유사목적 재활용, 타 기관 이관 등이 가능한 기상관측장비 10조를 기상청 본청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또한 관측장비 운영관리 명목으로 위탁관측 수수료를 22개소의 위탁관리자에게 지급하면서 「지상기상관측지침」에서 정한 방재기상관측장비 관리자 월간처리 실적부를 제출받지 않고 있고,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된 8명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승낙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음.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제5장

인사 · 복무 등 분야

[5-1] 승진심사위원회 허위 보고 등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징계)

인사담당자로서 발언권이 없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위원들의 승진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승진후보 1순위자를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키고, 하급자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다른 승진심사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회의록에 서명함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의 규정에는 누구든지 승진이나 그 밖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부정하게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인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얘기하는 등 승진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감추기 위해 회의록 등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아니 되나,

인사담당자A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권이 없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심사위원들의 승진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승진후보 1순위자 B를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키고, 대신 11순위자 등 10명을 승진대상자로 선정하게 하였으며, 하급자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다른 승진심사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회의록에 서명하였음.

인사담당자A를 징계하도록 요구

[5-2] 성과급 지급 부적정(주의)

성과급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성과평가와 무관하게 전 직원 및 부서장에게 합리적 기준도 없이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성과급을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간접비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비목의 재원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 「급여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연 2회 정기평가 성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A 기관은 2010년도~201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10년도의 경우 정기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부서장 3명에게는 성과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1백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음. 또한 '11년도 및 '12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는 정기성과 평가점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전 직원('11년 30명, '12년 42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을 지급한 후 부서장 3명에게는 500천원을 별도 추가 지급하였으며, '11년도 하반기에는 성과급 재원의 60%(110백만원)는 월 급여 기준액의 129.1%씩을 전 직원(37명)에게 지급하였고, 20%(37백만원)는 1인당 1백만원을 일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37백만원)는 하반기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등급별로 차등지급 하였으나 부서장 3명에게는 직책 성과급의 명목으로 2백만원 일괄 추가 지급하였음.

그 결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주도록 되어있는 성과급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함.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

[5-3] 연구원 등 직원 채용·관리 부적정(통보)

최근 3년간 신규로 직원 49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자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인원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1~7명을 임의로 채용하였고, 합격자가 입용을 취소하자 불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임용함

A기관의 자체 「인사관리 요령」 제11조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신규로 직원 49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총 20회에 걸쳐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인원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공고시마다 1~7명을 임의로 채용하였음. 또한 박사급 채용시 최종합격자로 5명 중 2명이 개인사정으로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자 불합격자 2명을 추가합격자로 정하였으며, 국제협력업무 담당 연구원 채용시에도 최종합격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자 불합격자 1명을 추가합격자로 임용하는 등 직원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연구원 등 신규인력 채용시 연차별 연구계획의 효율적 수행, 연구성과 제고,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인력채용에 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5-4] 승진업무 처리 부적정(경고)

개인평가 등급이 없는 직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하여 일반직으로 전직시키고, 인사규정 기준을 개정하여 특별승진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규정을 재개정하였으며, 근무실적 등 후보자 자료도 없이 1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승진을 결정함

A기관의 자체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특별승진임용 요건은 해당 직급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개인평가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기관 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명예퇴직할 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2011년에 시행한 총 4회의 승진 중 3회를 특별승진으로 실시하였고, 2011년 9월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실시로 인사업무시행세칙이 정한 특별승진임용 요건인 최근 2년간 개인평가 등급이 없자 각 부서에 무작위로 특별승진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 업무추진실적서(본인 작성)와 특별승진대상자 추천서(부서장 작성)에 대한 평가 결과만으로 특별승진자를 결정하였으며, 상담직 2인의 일반직으로 전직을 특별승진으로 처리하였음.

2011년 인사규정 전부개정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신설하면서 승진소요최소연수를 '당해 직급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과격적으로 정한 후 2011년에 집중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한 후 2012년 동 인사규정 개정 시 해당조항을 '특별승진은 각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의 2분의 1을 경과한 자에 한한다'라고 대폭 강화하였음.

2011년 8월 일반승진 심사 시 근무실적 등 후보자 자료도 없이 1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부원장으로 승진을 결정하였고, 2012년 6월 일반승진 심사 시에는 직급별 승진자 인원도 정하지 아니한 채 승진후보자 명부만으로 총 7명에 대한 승진을 결정하였음.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

[5-5] 채용 및 전직업무 부적정(경고)

A기관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직하고, 채용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특정인이 인사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당초 채용인원에 맞지 않게 최종합격자 수를 결정 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함

A기관의 인사규정에 계약직 및 전직 등에 대한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일련의 채용 절차 없이 2010년도 공개채용에 최종 선발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 4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약 한달 후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동 계약직 4명을 일반직으로 전직시킴.

2011년 공개경쟁채용 및 2012년 경력경쟁채용 시험시 채용계획을 수립치 아니한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실시하였고, 특정인이 심사위원 선정은 물론 모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인사업무에 깊게 관여함.

2011년 제4회 공개채용시 선발인원 8인을 공고하였으나, 서류심사시 인사위원장의 지시로 선발인원을 9인으로 변경하고, 면접심사시에는 공석발생 예상을 이유로 8개 직위에 10인을 최종 선발함.

2012년 제1회 경력경쟁 채용시 장비운영실장에 대한 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하여 추가 모집을 위한 공고(2012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를 하였음에도 동 직위에 대한 지원자가 없자 2012년 제1회 서류심사 합격자 2인을 임의로 서류심사에 합격 처리한 후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2013년 제5회 경력경쟁 채용시 강원지역 1인, 호남지역 1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호남 및 강원지역 거주자를 우대조건으로 공고하여, 응시자(강원 24인, 호남 33인) 중 강원 8인과 호남 8인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나, 면접심사시에는 강원지역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호남지역 응시자 2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함.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서류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3년 제2회 및 제5회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양 위원회를 모두 동일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임용 전에는 반드시 채용후보자의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및 진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임용결격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의 임용을 차단하여야 함에도, 2013년 11월 현재까지 사실확인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허위 경력사항으로 입사한 사례가 있음.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

[5-6] 인력운용 등에 관한 사항(경고)

A기관은 매년 인력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시로 채용과 승진 등을 실시하였고, 기상청은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A관은 매년 연도별 인력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치 아니하고, 수시로 채용, 승진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2011~2013년 기간 중 인사 관련 규정의 잦은 제·개정과 인사 관련 중간관리자의 잦은 교체·공석 또는 직무대행체제 등으로 채용 및 승진(전직 포함)시 특정인의 인사 전횡이 가능케 하였음.

또한, 기상청은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기상청장 승인사항을 승인하였고, 개원 이래 현재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A기관의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 및 기상청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

[5-7]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주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임의로 응시자 1인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채용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739호) 제 10조의 규정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 등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정보조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2012. 7. 16. 수립하고 채용 공고문에 ‘응시연령 제한 없음’,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등의 응시자격을 포함시켰으나, 원서를 접수한 9명 모두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 1인을 자격 및 어학사항 부족이라는 임의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정당한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2013. 3. 8. 태풍 장단기 예측기술개발을 위한 전산운영 업무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에게 담당업무와 무관한 공용차량 관리, 청사 및 연구지원동 시설물 관리 및 관리비 정산·납부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채용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하고 있음.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5-8] 지방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전보인사 기준 및 운영 미흡(통보)

순환 전보기준에 맞지 않게 잦은 전보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기준에 정해진 도서지역 근무자의 근무기간이 초과된 사례와 지방기상청 별로 도서지역 근무기간 기준에 차이가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은 「공무원 임용령」 및 기상청 인사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자체인사계획을 수립하여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을 해야 하나,

2개 지방기상청은 순환전보 기준 등이 포함된 자체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 인사기본계획이 수립된 4개 기관의 순환 전보 기준은 2년 이상 또는 3년 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순환 전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직전부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직원이 61.3%이고 현 부서 근무기간도 2년 미만 직원이 72.4%로 순환 전보기준에 맞지 않게 잦은 전보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또한 지방기상청별로 ‘도서(벽지)지역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도서지역 근무자가 일정 근무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정가·수시 인사, 자체 인사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근무자의 근무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인사운영을 하여야 하나, 본인 희망 등의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도서지역 근무기간 기준에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1개월 초과하여 전보 조치한 사례가 있었고 지방청별로 도서지역 근무기간 기준에 차이가 있어 벽지 또는 도서지역에 근무한 직원이 타 지방청으로 전보됐을 경우 다시 벽지 또는 도서지역으로 발령받은 불합리한 사례가 6건이나 발생되었음.

순환전보기준이 없는 지방기상청은 자체실정에 맞게 인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순환전보와 도서지역 전보 기준에 맞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5-9]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 운영 불합리(통보)

지방기상청은 성과평가 대상 그룹이 혼재되어 부서평가 점수가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우수한 공무원 보다는 부서평가 점수가 높은 부서(기상대)의 직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 있으며, 지방기상청의 성과급심사위원회에 5급 및 6급 이하가 포함되면서 본인의 성과등급을 심의의결한 사례가 발생함

지방기상청은 소속기관 내에 성과평가 대상 그룹이 혼재되어 있어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는 60점 만점에 거의 근접하는 99.2%인 59.51점으로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서평가 점수가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의 규정에 따른 조정기준 이외에 별도 조정 기준이 없어 성과급평가위원회에서 대부분이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 결과, 지급단위인 지방기상청의 우수한 공무원이 선정되기 보다는 부서평가 점수가 높은 부서 또는 기상대의 직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 있었다.

또한 5개 지방기상청은 5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확정하는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관 내 4급 이상자(기상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급 직위인 기획운영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하였다. 또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보수조정심의회로 대체함으로써 위원으로 위촉된 6급 이하 직원 5명이 본인의 성과등급을 심의의결한 사례도 있었으며, 위원으로 참여한 기획운영팀장의 성과등급이 상향된 경우가 발생되어 기상대장(4급 이상)이 위원회에 배제됨으로써 소속 기상대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5-10]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시정 · 주의)

1년 미만 근무자의 성과상여금 등급을 불합리하게 부여하고, 실 근무 2개월 미만자를 지급등급에서 제외하여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였으며, 실 근무 2개월 미만자를 지급등급 “A”로 결정하여 3백여만원을 지급함

A지방기상청에서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순위명부 조정대상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A등급을 그대로 부여함에 따라 동일 직급 지급대상자 중 1년을 근무한 직원 9명에게는 낮은 등급을 부여함.

B지방기상청에서는 2013년 8급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심사하면서 근무기간이 8개월 9일로 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을 S등급에서 B등급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함.

지급순위명부의 지급대상 중 실 근무 2개월 미만자도 지급등급에 포함하여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실 근무 2개월 미만자 4명을 지급등급에서 제외함으로써 지급등급별 인원이 연구관은 C등급 2명이 아닌 1명으로, 연구사는 A, B등급이 각 14명이 아닌 13명으로, 주사보는 S등급 1명을 제외하는 등 기준과 달리 산정하여 총 5명에게 성과상여금이 적게 지급됨.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를 동일 직급 12명 중 12순위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순위에 심의의결 하여 지급등급 “A”로 결정하고 3백여만원을 지급하여, 2명에게 성과급이 적게 지급됨.

성과상여금 지급제외자에게 지급된 3백만원 회수 조치 및 성과급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

[5-11] 연구직 순환 보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주의·통보)

보직관리규정이 개정된 이후 1년여가 경과 되도록 연구직공무원 보직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고,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수행 능력평가도 실시하지 않음

「보직관리기준」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국립기상연구소장은 소속 과장급 이상 직위에 2년 이상(타 기관 과장 경력 포함) 및 연구관 경력 4년 이상인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직수행능력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직수행능력평가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직관리규정이 개정된 이후 1년여가 경과 되도록 연구직공무원 보직수행능력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수행 능력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

연구직 순환보직제에 대한 세밀한 제도 분석을 통해 개선 및 존속 방안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제6장

구매 · 용역 분야

[6-1] 용역계약 및 준공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2010. 2.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제2조 제12항에 따르면 용역 대가 산정 시 직접경비에 계상되는 여비는 용역 수행자의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진예보시스템 예보관의 국내 강사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2인, 18주) 및 해외 벤치마킹(3인 이상, 2주)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국외여비와 국외 전문 강사 초빙교육(2인, 4주)과 같이 위 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국외여비 등 85백만원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지 않고, 위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함.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

[6-2] 하늘상태 자동관측 시스템 구매·설치 부적정(주의)

하늘상태 자동관측 장비에 필요한 운형 및 구름의 이동방향 측정·분석 기능 등이 구현되지 않은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인정하여 구매하였으며, 당초 계획과 다르게 목측 관측 지점이 아닌 4개 기상대에 설치함

A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운고, 운량, 운형 및 구름의 이동방향 중 운형 및 구름의 이동방향 측정·분석기능을 구축하지 않고 단순히 알고리즘 개발 등 기술조사만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는데도 적절한 보완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2. 24. 제품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8. 최종점검 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인정하여 2009. 11. 9. 위 시스템을 그대로 구매하였음.

더욱이 시스템의 의무구매 기간(최초 개발제품을 포함하여 2회 구매조건)이 종료된 후에도 A사로부터 2011. 12. 9. 및 2012. 6. 29.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구매·설치하였음.

또한 당초 위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했던 기상 관측지점(서울, 백령도 등 40개소 목측지점)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획하지도 않은 문산기상대 등 4개소(목측지점이 아님)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목측으로 관측하던 하늘상태를 자동으로 관측하겠다는 당초의 사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비 726백만원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를 가져옴.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

[6-3]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 부품교체 사업 부당추진(징계)

공항기상레이더의 예비품을 보유하고 있어 부품교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부품 단종과 예비품 소진 등을 이유를 들어, 타 사업의 불용액을 이용하여 공항기상레이더 부품교체 사업을 추진함

A기관은 000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천공항 공항기상레이더(TDWR)개선 계획”을 세우면서 낙뢰로 고장이 난 부품(RCP02 등 8종)을 같은 해 8. 8. 보유하고 있던 예비품으로 교체하여 정상운용 한 후 고장 난 부품과 교체한 예비품까지 수리(같은 해 12. 27.)하였고 단종된 부품은 예비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품교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데도 “주요 부품이 단종 되고, 낙뢰 피해로 해당 예비품마저 소진되어 부품교체가 매우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였음.

그리고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예산담당 사무관이 000사업 예산을 기상레이더 부품교체사업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므로 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000도입 임차료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 부품교체 사업과 전면교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음.

그 결과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교체할 필요가 없던 부품을 교체하게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옴.

관계자 2인에 대해 징계 요구

[6-4]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워크숍 등 대행용역 부적정(주의·통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A기관을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외부위탁이 불필요한 일반적인 워크숍이나 교육행사를 A기관이 대행하도록 용역사업으로 추진함

A기관은 2010. 1. 7.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0년도 기상청 교육·훈련 계획”의 57개 교육과정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실제 소속의 교관이 없는데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21명(기상청 직원 13명, 외부 직원 8명)의 교관이 있는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였음.

그런데도 기상청은 지정 신청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10. 1. 13. A기관을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14. 3. 12.까지도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14년 2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절차도 없이 해당기관을 기상업무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또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단순 워크숍이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교육 행사조차도 A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도록 하여 직접 추진할 경우와 비교할 때 행사 경비 외에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165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음. 더욱이 전체 용역 82건 중 69건은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13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12건)이거나 규격·가격분리입찰계약(1건)인데 기술평가에서 해당기관만을 ‘적격’으로 평가하여 독점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A기관에 대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고, 외부위탁이 불필요한 일반적인 워크숍이나 교육과 같은 행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

[6-5]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평가관리 태만 등(징계)

평가업무 담당자가 평가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평가위원들의 부적절한 합의과정을 그대로 묵인하였고, 평가결과를 취합할 때에도 검증조차 하지 않는 등 평가관리를 태만히 하여, 결국 '부적격'으로 입찰에서 탈락되었어야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당초 도입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 기상항공기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함

입찰제안서 평가 시에 배석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겠다고 합의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므로 평가기준대로 평가하도록 주지시켜야 했고, 평가결과를 취합·검증할 때에도 객관적인 평가항목에서 평가위원들 간에 평가가 서로 동일한지, 사전 검토 결과와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동일한지를 검토하여 다른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평가기준대로 평가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부적격'으로 판정한 후 재공고하여야 함.

그런데 업무 담당자는 평가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평가위원들의 합의과정을 그대로 묵인하였고 평가결과를 취합할 때에도 객관적인 평가항목에서 평가위원들 간에 평가가 서로 동일한지, 사전 검토 결과와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동일한지, 점수 합계가 맞는지 검증조차 하지 않는 등 평가관리를 태만히 하였음.

그 결과 기술평가에서 '부적격'으로 입찰에서 탈락되었어야 하는 A회사가 '적격' (85.54점)으로 평가받아 협상적격자로 선정됨에 따라 입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상실되었고, 당초 도입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 항공기 규모가 축소되어 기상관측장비를 항공기에 일괄 탑재하지 못하게 되어 다양한 기상 임무를 수행하려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음.

관련자 2인에 대하여 징계 요구

[6-6] 국가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부적정(주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차에 걸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던 기능을 중복 개발하는데 상당액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의 대내·외 활용도마저 미흡한 상태임

2009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4차에 걸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재기상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응용시스템(선진예보시스템, 생활산업기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등) 등 정보시스템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던 기능을 중복 개발하는 데 전자정부 지원 사업비 누계 10,986백만 원 중 7,539백만여 원 (68.6%)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그 결과 2012년 11월 4차년도 사업으로서 준공된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준공된 지 16개월여가 지난 2014년 3월 현재까지 서비스 개시(Page Open)조차 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구축된 풍랑·해일·태풍종합기상감시 서비스 등의 활용률 당초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시 목표로 하였던 연간이용량 대비 0.4%에 불과한 실정이고, 위 공동활용시스템의 일간 사용자 접속 건수는 단 18.4건에 불과하는 등 10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또한 향후 시스템 중복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

[6-7] 계약관련 서류작성 미흡(경고)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총 163건 중 139건에 대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승낙사항에 공사기간,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61건에 대해서는 검사 조서를 생략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제50조(계약보증금),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등에서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과 계약보증금 납부 및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지방기상청 담당공무원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총 163건 중 139건에 대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승낙사항에 공사기간,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상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고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총 163건 중 61건에 대하여 검사조서를 생략하였음.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

[6-8] 연구용 관측장비 운영·관리 부적정(시정)

연구용 관측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관측자료가 생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용역대가를 지급하였고,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의해 업체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소모성 부품을 예산으로 구입하였으며, 오토존데의 경우 적정한 예비품을 확보하지 못해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A기관은 수직측풍장비의 장애가 약 5개월간 지속되고 있어, 유지보수 업체가 장비장애에 대하여 수리를 하지 못하여 관측수행 불가 등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 하였을 때는 유지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월보수대가 지불), 제8조(지체상금)에서 정한대로 월보수대가의 전액공제 또는 정비보수 지체시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국내조달이 불가하고 외산 예비품이 없다는 사유로 검사·검수공무원은 월간 유지보수에 대한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유지보수료를 지급함.

장애수리를 위한 부대품, 소모품 등을 유지보수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 하면서 수직측풍장비 “유지보수용역규격서” 제12조(보수부품)에서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또는 긴급보수에 소요된 부품의 단가가 100만원 이하이면 “을(유지보수업체)” 이 부담하고, 초과하면 “갑” 이 부담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도 단가가 100만원 이하 인 ‘AC FAN’ 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2010. 6. 29. 계약 하였으며, 2010.6.30. 검수완료 하고 ‘AC FAN’의 부품가액 지급하였음.

관측장비를 운영함에 있어 소모성 부품의 노후상태 및 재고량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하나, ‘오토존데’ 장비의 소모성 부품인 ‘풍선노즐’ 에 대한 예비품을 확보해 놓지 않아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

소모품 부품가액 회수 조치 및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6-9]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급 등 부적정(시정·경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증액되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계약을 추진해 129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유지보수 대상물품 가감으로 발생한 차액을 감액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IP 전화기로 대체 납품토록 함

기상청 전산·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 계약업체가 제출한 유지보수비와 운영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서 내용이 세부적이지 않고, 유지보수와 운영관리의 과업내용의 구분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 품목 중 일부를 증액산출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사업부서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증액된 산출표를 2차년도 계약시에 그대로 인정하여 129백만원을 과다 지출하였음.

2011년 기상청 전산·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 합의서 체결시에 유지보수 대상품목의 불용 등으로 감소된 부분과 신규로 증가되는 품목의 유지보수비를 조정하면서 발생한 차액은 감액하여 계약했어야 함에도 이를 자산취득비로 추진해야 할 FMC사업 관련 IP 전화기로 대체하여 납품토록 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일자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정하지 않고 IP 전화기 572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

과다산출된 유지보수비 회수 조치 및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

[6-10] 기후자료 보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리 부적정 [시정 · 주의]

유지보수업체가 총 27회의 점검을 실시하면서 방문점검은 8회, 원격 점검 19회, 증빙서류 없이 점검실적을 제출한 사례가 3건에 이르고, 해양기상관측 부이자료 등 7종의 자료가 원활하게 수집되지 않고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음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통계업무 규정」 제5조(기후자료품질관리)에 기후자료에 대하여 관측 및 전송과정 등에서 발생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관서에 통보하여 이를 수정 또는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 3.6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3.7 「긴급보수 및 개선요구」에서 계약 업체는 정기점검 월 2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지보수업체가 2011.2.14. 부터 9.30. 사이에 총 27회의 점검을 실시하면서 방문점검은 8회만 실시하고, 서버가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어 점검을 실시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19회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증빙서류 없이 점검실적을 제출한 사례가 3건에 이르고 있고, 실제 점검일시와 다른 시간에 점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검사공무원은 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음.

또한 실시간 품질관리 대상자료 9종 중 2종은 적정한 품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양기상관측 부이자료 등 7종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자료가 원활하게 수집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 및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6-11] 기상청 유·무선 통합서비스(FMC)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경고]

FMC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보안대책 마련시까지 사용 금지’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당초 계획했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제, 이메일, 메신저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고, 유·무선 융합통신이 가능한 전화교환기(IP-PBX)에 수용한다며 1,157대의 전화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함

A는 FMC 사업에 대한 보안성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11.25. 국가정보원에 위 FMC 사업의 보안성 검토요청을 하고 같은 해 12.30. “내부시스템 접근에 대해 별도의 보안대책 마련시 까지 사용금지” 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결과 회신이 있었음에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무시한 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 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 결과 국가정보원이 요구하는 보안대책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그린 IT지원을 위한 Mobile office 구축 “ 사업에서 투자시설은 갖추었지만, 주요 과제인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결제, 이메일, 메신저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업 업무용 및 간부용으로 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500대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유·무선 융합통신이 가능한 전화교환기(IP-PBX)에 수용할 1,157대의 전화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게 됨에 따라 2005년에 설치하여 내용연수가 10년 중 5년 정도가 남아있는 교환기 및 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당초 계획에도 없던 사업에 167백만원 상당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요되게 하였으며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전화기 400대를 추가적으로 납품토록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

[6-12] 해양기상관측부이 정기점검에 대한 관리 부실(주의)

계약상대자는 월 1회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계약기간 중 7회의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동해 부이의 경우에는 3개월 연속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사업의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제6조 제1항에는 ‘계약상대자는 월 1회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기점검을 생략하거나 원격자료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약정하고 있으나,

유지보수 업체는 2011년 1월~10월 사이에 특별한 사유없이 필히 실시해야 할 정기점검(연정비·사고정비 6회 제외) 총 74회 중 9.5%에 해당하는 7회의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그 중 동해 부이의 경우에는 2011년 1월~3월까지 3개월 연속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점검을 하지 않음.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6-13] 기상위성분야 교육훈련체계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용역사업을 수행하며 당초 인력투입 계획에 있던 3명을 참여시키지 않고, 승인절차 없이 계획에 없던 인력 19명을 사업에 참여시켰으며, 위성전공자 계절캠프에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내부 직원을 강사로 구성함

용역사업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기상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기준 소요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인력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기상청의 승인을 얻어 참여시키도록 되어있으며, 계약상대자가 2011.6.20.에 제출한 착수계에는 사업 총괄 및 관리 2명, 교재집필 및 자문 3명, 교육기획 및 운영 2명, 콘텐츠 개발 1명, 시스템 개발 및 디자인 3명 등 총 11명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으나,

정산서에 포함된 인건비 집행내역을 보면 8명만이 계획대로 투입되었고 나머지 3명은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승인절차 없이 당초 계획에 없던 인력 19명을 사업에 참여시켰음.

또한 당초 계획에 교재집필 및 감수를 담당하는 인력 3명은 표준교재 자문 및 이론서 설문에 참여만 한 채, 표준교재는 별도 인력 2인이 집필하였는가 하면, 과업지시서에는 위성분야 전공자를 위한 계절캠프를 운영하는데 국내·외 위성관련 교수진과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기로 되어있는데도 국가기상위성센터 직원을 강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강사료를 지급함.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 및 관련자 주의 조치

[6-14] 위성자료 응용분야 활용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사업 부서에서 최종성과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29개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은 부적합, 12개 항목은 부분적합으로 판정하고, 16개 항목만을 적합으로 판정하고서도 걱정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사전 승인 없이 6명의 인력을 변경하였는데도 제재하지 않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검사)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과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최종성과물에 대한 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나,

사업부서에서는 2011. 12.5 부터 2011.12.19. 까지 최종성과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29개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은 부적합, 12개 항목은 부분적합으로 판정하고, 16개 항목만을 적합으로 판정하고서도 걱정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인력을 조사한 결과 참여인력 19명 중 6명은 2011년도에 발주사업 3개 이상에 참여하였는가 하면, 과업지시서에 참여인력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데도 사전 승인 없이 환경분야 및 시스템 개발 책임급 인력 2명과 연구인력 4명을 변경하는 등 연구참여 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당초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여 다양한 분야의 수요자와 외부 기관에서 응용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 및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6-15] 위성센터 DB·웹서비스 통합 및 지상국 스토리지 보강사업 추진 미흡(시정)

사업 계약자가 하도급 승인절차 없이 하도급 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인력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 기간 중 변경된 물품이 납품내역서 및 검사조서에 반영되지도 않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계약자는 하도급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일, 사업범위 등을 기재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인력변동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 3명을 사업에 참여시킴.

그리고 납품되어야 할 물품이 사업 도중 상호 협의에 의해 일부 변경되었으나, 납품내역서 및 검사조서 목록에 반영이 되지 않아 일부 물품이 오기되거나 누락되는 등 실제 납품된 물품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재산등록대장에도 일부 물품이 잘못 등재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제안요청서에는 사업완료 시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나, 주계약자는 사업의 일부분에 대한 보고서만 제출하였음.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 및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6-16] 기상위성자료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DB 개선(Ⅱ) 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계약자가 하도급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하도급업체가 6가지 세부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사업담당자는 검사시 “적합”으로 판정하여 대급을 지급함

제안요청서에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명시되었고 제안요청서 심의 시 6명의 심의위원 중 2명이 “과업내용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로 정하였고, 이로 인해 조달입찰이 1차 유찰된 후, 2차(수의계약) 계약이 체결(8월 19일)이 되면서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기간이 103일로 단축되었음.

주계약자는 하도급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사업내용 중 총 6가지 세부과업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조 미비로 완료되지 못하였음.

그런데 사업담당자는 사업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검수확인서”에는 “적합”으로 판정하여 대급을 지급하였음.

관련부서에 시정 조치 및 주계약자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6-17]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 준공처리 및 하자보수 부적정(시정)

「관측환경 개선공사」 준공검사 시 공사시방서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하여 다수의 지점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공사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까지 16개 지점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관측환경 개선공사」 준공 검사자는 관측장소 성토다짐 공사의 적정성 및 성토면 균일화 작업의 적정성, 관측장비 설치용 콘크리트베이스 시공의 적정성, 동절기 잔디식재 작업의 적합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 후 육안 상 이상이 없다고 판정하여 준공검사를 적합으로 하였음. 그 결과 A지점의 경우 관측장비 설치장소의 지반침하로 인해 관측철탑이 기울어 졌으며, B지점의 경우에도 초음파 적설계가 기울어 졌으며, C지점과 D지점의 경우에는 목재 울타리가 파손되었고, E, F, G지점의 경우에는 관측장소에 잡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또한 공사완료 후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26개 지점 중 10개(38%) 지점은 관할 기상대의 하자조치 요구에 따라 보수를 하였지만 16개 지점(62%)은 하자보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관련부서에 시정 조치 및 관측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6-18] 대국민기상 및 기후변화정책과정 교육사업 분리 추진 부적정(통보)

교육담당 부서에서 1건의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내용을 각 지방청에서 10건의 수의계약 사업으로 분리하여 개별 추진함

“지역별 기후변화 서비스 대국민 기상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5개 지방청에 20백만원씩 재배정하였고 각 지방청에서는 동일한 “기후변화 정책과정”의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그 결과 “기후변화 정책과정”의 내용이 동일·유사하여 A부서에서 대국민 기상교육에 포함하여 1건의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데도 각 지방청으로 하여금 수의계약방식으로 10건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개별 추진하도록 함.

예산의 효율적 집행차원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

[6-19] 위탁연구 용역과제 수행 및 성과물 활용 부적정(주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조건임에도 연구기간을 6개월 연장 해주고, 부실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연구용역과제가 정상 완료된 것으로 평가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 내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 지연 또는 중단이 되는 경우에만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계약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계약상대자인 미국 G대학교가 계약기한이 7일이 경과된 2012. 2. 8.에 2012년 4월 APCC에서 개최되는 과학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다는 사유를 들어 당초 연구기간을 6개월 연장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 하였음.

또한 2012. 7. 27. 제출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APCC Strategic Plan, 2012-2016)가 자문 형식으로 되어있고, 분량도 총 15페이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과학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원국 실무단의 역할 및 활동내용 등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작성되었는데도 이를 최종 연구 성과물로 수령하고, 2012. 8. 23. 내부 선임 연구원 4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연구용역 과제가 정상완료 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6-20] 청사 및 노장 주변 환경개선 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단일 용역 건으로 일반경쟁에 부칠 수 있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할 수 있는 용역임에도, 기타 사유를 들어 2천만 원 미만의 용역으로 분할하여 동일한 업체에 같은 계약기간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 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 1. 1. 부터 2013. 5월 현재까지 A지방기상청에서는 단일 용역건으로 일반경쟁에 부칠 수 있거나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할 수 있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분산 되어 있고 용역관리상 비효율적이라는 사유를 들어 2천만 원 미만의 용역으로 분할하여 동일한 업체에 같은 계약기간에 수의계약을 맺어 용역을 수행한 것이 총 20건에 이르고 있음.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6-21] 홈페이지 호남위험기상정보센터 구축(7차) 용역 대금지급 부적정(주의)

용역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역사업의 대가를 검사·검수일 보다 7일 빠르게 지급함

용역사업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사업전담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계를 접수받아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절차를 거쳐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에 검사 요청한 문서를 근거로 검사·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도에 추진한 호남위험기상정보센터 구축 7차 용역사업의 경우 검사·검수일은 2012.7.11인데도 대금지급일은 그보다 7일 빠른 7.4에 이루어져 관련 규정을 위반함.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6-22] 축전지감시시스템 원가계산 집행 부적정(경고)

적정 사업예산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원가계산을 실시하였고, 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수량 추가 등의 사유로 원가계산을 재차 실시하여, 단일사업에 대해 2회의 원가계산을 실시한 결과로 예산을 낭비함

원가계산은 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A기관은 2010년에 '축전지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적정예산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원가계산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동 사업 예산이 편성되자 수량 추가 등의 사유로 다시 원가계산을 실시함에 따라 단일사업을 위한 2회의 원가계산 실시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

[6-23]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II) 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금액의 45%를 선금으로 승인해 주었고,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에 대한 정산증빙서류를 미 징구하였으며, 제안 협상 시 제공하기로 한 GIS 엔진 등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사유로 과업내용에서 제외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010.11.30)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에 대해서는 선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4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의 선금급 지급 결정 알림’ 문서(‘11.4.25.)에는 선금에 대하여 준공 30일 전까지 정산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11.4.12. 선금지급을 의뢰하면서 선금지급의 추가 사유가 없이 선금 상한의 5%를 초과한 계약금액 930백만원 45%를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승인해 주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에 대한 정산증빙서류를 전혀 징구하지 않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선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산업무를 소홀히 함.

또한 세부과업인 ‘레이더자료 표출 모듈 성능 보강’에 대한 제안서협상안에 레이더자료 표출시 GIS 정보와의 자유로운 중첩, 확대/축소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GIS 엔진 및 API는 기상레이더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사유로 GIS 엔진 구축을 과업내용에 제외시켜 도로, 철도에 대한 GIS 정보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는 등 일부 성능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6-24] 연구용역과제 수행 결과 평가업무 미실시 등 과제관리 부적정(통보)

연구 용역과제 중 6개 과제에 대해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과제 활용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연구노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과제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과정 및 연구 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는 용역과제가 완료되기 15일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 용역과제 중 6개 과제는 과제가 종료된 후 까지 용역과제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23개 과제는 과제 종료 후에 용역과제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용역과제 결과보고서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리고 2014년 4월 현재 과제 종료 후 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가 11건이나 되고, 1년을 초과하여 제출한 과제가 19건, 2년을 초과하여 제출한 과제가 24건 등 총 54개 과제의 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였으며, 자체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별도의 연구노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연구용역과제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

[6-25] 연구용역사업 계약이행 관리 및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주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하면서, 6명 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사유로 계약체결이 되기도 전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함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8조에 '과제담당관은 해당 용역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구성'토록 정하고 있으나,

'주요 스포츠 종목별 기상서비스 수요·조사 분석'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하면서, 6명 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음.

또한 '날씨리스크 인수 최적화를 위한 기획연구' 사업의 제안요청서에는 '계약 후 상호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사유로 계약체결이 되기도 전에 착수보고 계획을 A사로 통보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6-26] 지진관측장비 계약관리 부적정(주의·통보)

입찰 당시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A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A사는 2013. 5. 22.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추공 가속도센서(Titan BH) 지진관측장비의 경우 제조사인 나노메트릭스(Nanometrics)사에서 입찰 당시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의 카탈로그를 만들어 제출하였음.

2013. 5. 27.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엔디에스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카탈로그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안서 작성 수준’에 대한 평점을 0점이 아닌 2점으로 평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엔디에스는 0점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최종 평가 점수가 84.12점으로 규격 심의에서 탈락되었어야 하는데도 그 보다 2점이 많은 86.12점으로 평가를 받아 규격적격 업체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5. 31. 가격입찰 결과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계약(계약금액: 1,133백만원)을 체결하게 되었음.

그러나 기상청은 2013. 10. 18. 현재까지 엔디에스의 시추공 가속도센서 허위 카탈로그 제출 여부를 조사 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A사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및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제7장

적극 행정 미수행

[7-1] 재단법인 설립 · 운영 부적정(통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A, B, C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일관된 기준 없이 부여하였음

연구과제 관리기관들은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유사 업무 중복 수행 등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하거나, 사업간 상호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저하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 연구과제 관리기관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2006. 1. 27. 기상·지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관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A를 설립한 후 과제 관리업무를 대행하다가, 2009년 9월부터는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2005. 8. 9. 설립된 재단법인 B에 기후와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2013년 4월부터는 재단법인 C에서 기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제각각 설립된 3개 과제관리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등 소관 재단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7-2] 공공기관 지정 대상기관 통보 미실시(주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A기관, B기관, C기관을 2014년 4월 현재 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있음. 공운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운위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해제, 변경지정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운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주무기관은 공운법 제4조에서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나,

A기관이 2013년 공공기관 지정 시부터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었는데도 임의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황조사 대상기관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A기관, B기관, C기관을 2014년 4월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